

202.40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30으로 발령된,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법률 및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2020년 7월 9일까지 지속하며 다음 수정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 행정명령 202.30에 포함된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8장 415.26항 세부조항 (c) (1)절 하부절 (v) 조항 (b), 487.9항 세부조항 (a) (8)절, 488.9항 세부조항 (a) (5)절,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 4656항 세부조항 (7)의 수정은 지속되며, 이러한 수정이 재개 2단계에 도달한 지역에 위치한 모든 요양원 및 성인 관리 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가 모든 직원, 계약 직원, 의료 직원, 운영자 및 관리자 등 모든 인력에 대해 매주 1회 코로나19를 검사하거나 검사 예약을 해야 하는 범위까지 이러한 수정이 개정되는 한에 한합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교육법(education law) 제2022항 세부조항 4 및 및 교육법 제2007항의 세부조항 3, 교육구가 제안한 원래 예산이 행정명령 202.26에 따라 2020년 6월 9일에 개최된 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 또는 개정된 예산의 유권자들에 대한 재재출은 미래의 집행 명령에 의해 결정된 날짜 및 절차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러나 2020년 7월 9일 이전에는 그러한 재투표가 시행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2020년 6월 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